# (15-002) ○○종합체육관 신축공사 지붕 붕괴사고

공사명	○○종합체육관 신축공사			
사고일시	2015년 02월 11일(수) 16:53분경		기상상태	흐림
소재지	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	사고 종류	붕괴	
구조물 손실	슬래브	인적피해	중상 3명, 경상 8명	
장비 손실	_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 🔾 ),	해당없음( )

## ① 공사개요

- o 공사종류: 문화 및 집회시설
- o 연면적: 7,102m²
- o 규모: 지하 1층/지상 2층

## 사고개요

### ② 사고경위

o 지붕층 바닥(폭 46m, 높이 14.9m, 데크플레이트)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(80% 진행) 중 지붕 중앙부터 붕괴 발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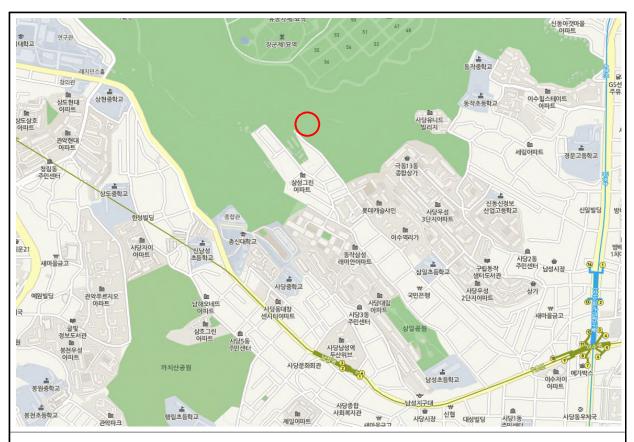
#### ③ 사고원인

o 거푸집 지지대(시스템 동바리)의 가새 설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시공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된 것으로 추정. (본 건물의 지하층에는 어떠한 Support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)

o 시공 중에 작용하는 시공하중은 설계하중 보다 과다하게 작용하므로 거푸집을 철거한 경우에도 잭서포트 등을 설치하여 상부 구조물의 시공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여야함.

## 재발방지 대책

- o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·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.
- o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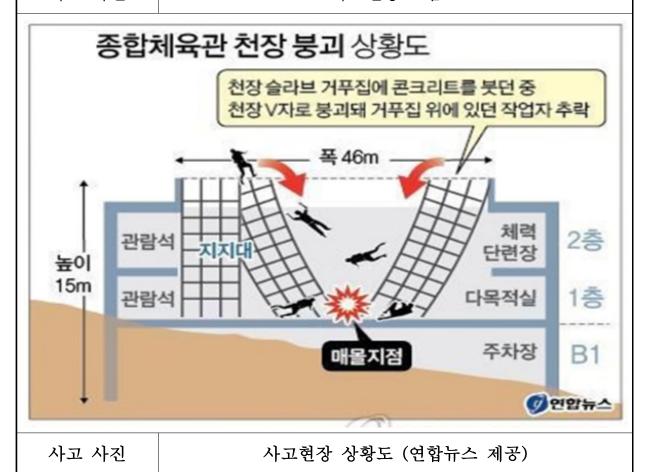
사고 사진

사고현장 전경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 조감도



- 25 -